

제 12 조(비정규등록)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논문연구학점 취득 을 위한 등록금액은 등록금의 15%의 금액으로, 수료유예 등록 및 학위수여를 위한 등록금액은 등록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 13 조(예비수강신청) 다음 학기 학생들의 등록여부,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, 신상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학기 종료직전 소정의 양식으로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4 조(청강) ① 이 대학원에 개설된 강의를 청강하고자 할 때에는 글로벌협력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청강할 수 있으며, 청강생의 기본자격은 학사이상의 자격을 소유한자에 한한다.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원 졸업자 : 2학점 당 등록금액의 15%
2. 기타 : 2학점 당 등록금액의 25%

② 청강을 원하는 사람은 당해 학기 초 지정된 기일까지 청강신청서[서식 1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청강에 대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, 타 대학원 등에 학점이수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.

제 15 조(수업평가) 학기 종료 직전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재학생들에 의한 수업평가를 실시한다.

제 16 조(수료증발급)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교과과정을 수료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장 학 금

제 17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) 이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면학장학금 : 학부(또는 대학원)성적이 우수하거나 논문발표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50%, 3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- ㉠ 자 격 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취득, 평점평균이 3.5 이상, 정규등록 학생
- 신입생 : 학부 성적 총 평점평균이 3.3 이상
  - 재학생 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취득, 평점평균이 3.3 이상, 정규등록 학생

### < 지급기준 >

구분	평점평균	비고
50% 면학장학금	3.5 이상	신/재학생 모두 적용
30% 면학장학금	3.3 이상	

㉡ 범 위 : 내부장학금 해당자 이외의 정규 등록생 일체

㉢ 동점우선처리 :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, 총점이 높은 학생

2. 공무원·군인, 국회의원, 강원도 시/군/도 의회 의원 장학금 : 공무원·국회위원, 강원도 시/군/도 의회 의원, 군인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등록금의 50%를 장학금으로 감면해 준다.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

3. 재단산하·교직원장학금 : 대학 외(재단, 동일법인 등) 교·직원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등록금의 50%를 감면해준다. 대상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.

4. 조교장학금 : 조교로 임용된 자에게 별도의 조교임용규정(대학원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)에 따라서 지급한다.

5. 산학협력장학금 : 본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연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회사 소속직원 입학 시 각 학기 수업료의 50%를 감면한다. 대상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. 기타 자세한 사

항은 가족회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6. 한림대학교 교직원장학금 : 한림대학교 교직원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를 감면한다. 세부 감면율은 별표2에 따른다.
7. KOICA초청장학금 : KOICA 초청 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금은 100% 감면하고, 수업료는 KOICA 등록금 지원액의 초과분을 감면한다.
8. 강원도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장학금 : 강원도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연수생이 입학한 경우 입학금 및 1·2학기 수업료를 100% 감면한다.
9.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협약 장학금 : 한림대학교 또는 글로벌협력대학원과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의 50%를 장학금으로 감면한다.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
10. 내부장학금의 경우 중복지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11. 외부장학금은 교외에서 유치한 장학금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급한다.

제 18 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1. 복학
2. 재입학
3. 징계(유기정학 이상) 해제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
4. 기타 학칙 위반자

제 19 조(장학금 지급 유효기간) 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한다.

## 제 5 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시험

제 20 조(외국어시험) ① 글로벌협력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을 실시한다.

외국어시험의 과목 및 기준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② 글로벌한국학과(외국인전형)의 경우 TOPIK II(한국어능력시험 고급)으로 대신한다.(단,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인정한다.)
- ③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, 공인외국어 시험(TOEIC, TOEFL, TEPS, HSK, JPT 등)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④ 공인외국어 시험의 기준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
- ⑤ [별표1]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공인외국어 시험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,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- ⑥ 외국어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.

제 21 조(종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교과목은 개설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학생이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선택한다.

-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.

제 22 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.

- ② 종합시험은 전공교과목을 16학점이상 취득하고,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.